

교원양성과정운영규정

2023.10.01.제정	2006.03.01.일부개정	2008.03.01.일부개정	2010.10.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4.03.28.일부개정	2016.02.24.일부개정
2017.07.14.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20.05.01.일부개정	2021.04.28.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3.06.29.일부개정		

<학사관리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2조 (적용범위 및 설치학과) ①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학생으로서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2.24., 2017.7.14.)

②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 승인인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의한 교육부의 “교직과정설치승인서”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본 대학교 설치 학과 현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10.1., 2016.2.24., 2017.7.14., 2020.5.1., **2023.06.29.**)

제3조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0.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0.5.1., 2021.6.1.)

③ 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부처장,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학과장, 교직운영팀장을 두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은 6인 이내로 외부 현장교사 1인 이상 포함한다.**(개정 2010.10.1., 2011.4.18., 2012.8.1., 2014.3.28., 2016.2.24., 2017.7.14., 2018.7.1., 2020.5.1., 2021.4.23., 2021.6.1., **2023.06.29.**)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인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10.1., 2020.5.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0.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0.1.)

⑧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 2017.7.14., 2020.5.1.)

1. 교원양성과정 개설·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자격 무시험검정 및 합격기준 결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의결 사항
- ⑨ 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1.4.23.)

제4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이수 신청은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해당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제5조 (이수예정자 선발 및 이수포기)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1학년 2학기 말에 승인된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이수자를 선발하고, 예비이수자 중에서 교직이수자 선발기준(인적성검사 40%, 성적 30%, 면접 30%)에 따라 2학년 2학기 말에 이수예정자를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0.10.1., 2016.2.24., 2017.7.14., 2020.5.1., **2023.06.29.**)

①의 2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경우 승인인원을 포함하여 입학정원의 30%이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단, 기존승인인원 초과분은 반드시 장애인만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0.5.1.)

② 이수예정자의 선발 시 성적은 선발당시 성적이수표에 등재된 성적 평점평균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인적성검사 및 학과의 면접결과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10.1., 2016.2.24., 2020.5.1.)

③ 삭제 (2020.5.1.)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면접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2.24., 개정 2017.7.14.)

⑤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가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말에 교직과정이수포기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4.)

제6조 (이수기준)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영역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영역 4과목 8학점, 교육실습영역의 2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와 인성' 과목 1학점 및 교직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6.2.24., **2023.06.29.**)

②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하되, 타 이수영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영양교사(2급) 취득 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 이수를 제외한다.(개정 2010.10.1., 2016.2.24.)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2.24.)

⑤ 졸업 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합격증을 제출한 학기의 졸업일자에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발부한다.(신설 2016.2.24., 개정 2017.7.14., 2020.5.1.)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은 2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7.14.)

⑦ 입학 연도별 교직과목 및 이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17.7.14., 개정 2023.06.29.)

⑧ 본조 제3항의 기본이수과목은 교육부 고시 과목으로 정하되 고시된 과목과 다른 경우, 해당 학과는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4.)

⑨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수하여야 하는 성인지 교육의 이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0.5.1., 개정 2021.4.23., 2023.06.29.)

제7조 (자격상실)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이수성적)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졸업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개정 2016.2.24.)

제9조 (교육실습) ①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편성한다.(개정 2010. 10.1.)

②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③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개정 2010.10.1.)

④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한다.(신설 2010.10.1.)

⑤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

⑥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10.1.)

제10조 (교육실습계획)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교직과정 설치 신청시 지정한 협력학교 등과 협의하여 교육실습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4.3.28., 2018.7.1., 2023.06.29.)

② 교육실습계획은 소속 학과 또는 협력학교 등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졸업유예) 교직과정 이수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라도 교직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5.1.)

제12조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요건) 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학기 전 소정의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21.4.23.)

② 위원회는 무시시험검정 시에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정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07.14., 개정 2021.4.23.)

1. 졸업 및 학위등록 여부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3.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 여부
4. 성적기준 충족 여부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7. 영양사 면허증 취득 여부(영양교사에 한하며, 합격확인서 또는 합격증 사본을 제출 받아 2차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
8. 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이수 횟수 충족 여부

③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은 무시시험검정 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적대학의 이수 교직과목 또는 제적 이전 학과에 개설된 이수 교직과목인 경우만 인정한다.(신설 2017.7.14.)

제13조 (사범계학과) ① 사범계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신청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0.10.1.)

② 사범계학과의 교원자격 이수기준 및 이수인정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다.(신설 2010.10.1.)

제14조 (복수전공) ①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사범계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또는 사범계학과의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상호 취득할 수 있다. 단, 주전공 학과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중 정해진 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복수전공 대상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③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입학정원의 20%이내,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에서 복수전공 교원자격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선발한다.(신설 2010.10.1.)

④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

제15조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①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하는 자격종별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이미 발급받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자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자격증의 기재사항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재사항대로 발

급하여야 한다.

③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받아 내부결재로 심사 후 자격증 원본에 표기하여 정정한다.

[본조 신설 2017.7.14.]

제15조의2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21.4.23.]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과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7.14.]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신청자격에 관하여 변경된 기준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수자선발에 관한 변경된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사범계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의 적용대상 및 사범계학과 입학생의 자격기준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복수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 4학점(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0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1항 및 4항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 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설치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적용범위 및 설치학과에 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제3조(이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제9항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교육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9항 성인지 교육 의무이수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교원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1항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 학과 현황 (신설 2017.7.14., 개정 2020.5.1., 2023.06.29.)

구분	학과명	자격종별	표시과목	최초 적용학년도 (입학연도)
사범계 학과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없음	2006
교직과정 설치 학과	관광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관광	2002~2021
	호텔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관광	2004~2021
	뷰티케어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용	2006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영양교사(2급)	없음	2012~2023
	패션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의상	2003~2021

<별표2> 입학 연도별 교직과목 및 이수기준 (신설 2017.7.14., 개정 2023.06.29.)

입학연도 영역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16학년도 입학자	2017 이후 입학자
전공 및 전공교직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교직이론	○ 14학점(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또는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소양	○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 6학점(2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6학점(2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육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인·적성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입학년도 영역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및 전공교직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 전공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목) 이상 포함) ○ 전공교직 : 8학점(3과목) 이상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교직소양	○ 6학점(2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6학점(2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8학점(3과목) 이상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교육
교육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2과목) 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인·적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교육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 4회 이상 (3년이하의 교원양성과 정 2회이상)	○ 4회 이상 (3년이하의 교원양성과 정 2회이상)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7.14.)

교 직 과 정 이 수 포 기 서

학 과 :

학 년 :

학 번 :

생년월일 :

성 명 :

위 본인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신청)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본인직접 기재)	
--------------------------	--

신 청 자 : (인)

위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면담결과 (학과장 기재)	
-------------------------	--

학 과 장 : (인)

년 월 일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